

의안번호	2201156
의 퇴 인	민형배의원
회 답 일	2024. 8.22.
추계번호	24D144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국가청렴교육원을 설치하고, 학교의 부패방지교육, 기업의 부패방지교육, 국제협력 촉진 지원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64억 2,500만원, 2030년 65억 7,4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322억 6,300만원(연평균 64억 5,3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국가청렴교육원 설치 (안 제23조의2)	3,810	3,732	3,806	3,882	3,959	19,188	3,838
학교의 부패방지교육 지원 (안 제81조의3)	890	890	890	890	890	4,450	890
기업의 부패방지교육 지원 (안 제81조의4)	1,025	1,025	1,025	1,025	1,025	5,125	1,025
국제협력 촉진 (안 제81조의5)	700	700	700	700	700	3,500	700
합 계	6,425	6,347	6,421	6,497	6,574	32,263	6,453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3조의2 (국가청렴교육원의 설치)	부패방지 및 시민의 권익향상교육 및 연구·개발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 소속으로 국가청렴교육원을 두고, 원장은 정무직으로 함	의무규정
2	안 제81조의3 (학교의 부패방지교육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초·중등학교”)의 부패방지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에 따라 초·중등학교에서 실시되는 부패방지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연구와 교육활동을 위한 시설·인력·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음	
3	안 제81조의4 (기업에 대한 부패방지교육 지원)	위원회는 기업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기업윤리 확립 및 청렴문화 조성 교육의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4	안 제81조의5 (국제협력의 촉진)	위원회는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 외국의 연구개발기관 및 단체 등과 국제 부패방지 관련 조약의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 개발 및 지원 등을 위하여 국제협력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23조의2(국가청렴교육원의 설치)	○	
2	안 제81조의3(학교의 부패방지교육 지원)	○	
3	안 제81조의4(기업에 대한 부패방지교육 지원)	○	
4	안 제81조의5(국제협력의 촉진)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안 제23조의2에 따라 국가청렴교육원을 설치하는 경우 증가인원 규모, 조직구성 등은 위원회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며, 이때, 증원된 인원의 사무공간은 현재 청렴연수원의 유허 사무공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임차비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
- 안 제81조의3(학교의 부패방지교육 지원), 안 제81조의4(기업에 대한 부패방지교육 지원), 안 제81조의5(국제협력의 촉진)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위원회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추정
- 안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안 심의의결 기간 및 예산 확보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국가청렴교육원 설치 (안 제23조의2)

- 개정안에 따라 위원회 소속으로 국가청렴교육원을 설치하는 경우 인건비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현재 위원회 소속기관인 청렴연수원이 국가청렴교육원으로 격상됨에 따른 인건비,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추정함
- (현황) 청렴연수원은 위원회의 소속기관으로 2012년 개설되어 현재 1원 2과 25명으로 운영 중임¹⁾
- (개정안) 청렴연수원(정원 25명)을 국가청렴교육원으로 격상하고, 원장을 정무직으로 하는 경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을 유사사례로 참조하

1)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5(직무) 청렴연수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14조의6(연수원의 장) ① 연수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면, 1원 2부 1센터 7과로 구성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30명이 더 증원된 55명 규모로 설치하는 것으로 추정함

- 유사한 교육훈련기관으로 볼 수 있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경우 원장이 정무직인 차관급이며, 1원 3부 1센터 8과, 156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국가공무원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교과·교재 및 교육기법의 연구·개발·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인건비) 차관급 1명, 고위공무원 3명, 3급 1명, 4급 3명, 5급 8명, 6급 7명, 전문경력관 7명, 총 30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하며, 위원회의 직급별 보수에 수당 및 기관부담금을 합하여 산출함

- (봉급) 정무직 차관급 원장 1명을 비롯하여 증원되는 인원을 직급별로 추정하고([표 2] 위원회 제출자료), 인원별로 위원회의 각급별 봉급을 적용하면, 아래 [표 3]과 같음

[표 2] 국가청렴교육원 신설에 따른 직급별 증가 인원수 추정

(단위: 백만원)

	차관급	고위공무원	3급	4급	5급	6·7급	8·9급	전문경력관	합계
청렴연수원 (현행, A)	－	－	1	2	2	13	6	1	25
국가청렴교육원(개정안, B)	1	3	2	5	10	20	6	8	55
증감 (B-A)	+1	+3	+1	+3	+8	+7	－	+7	+30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제출자료(2024.8)

[표 3] 추가인원의 봉급액 추정: 2024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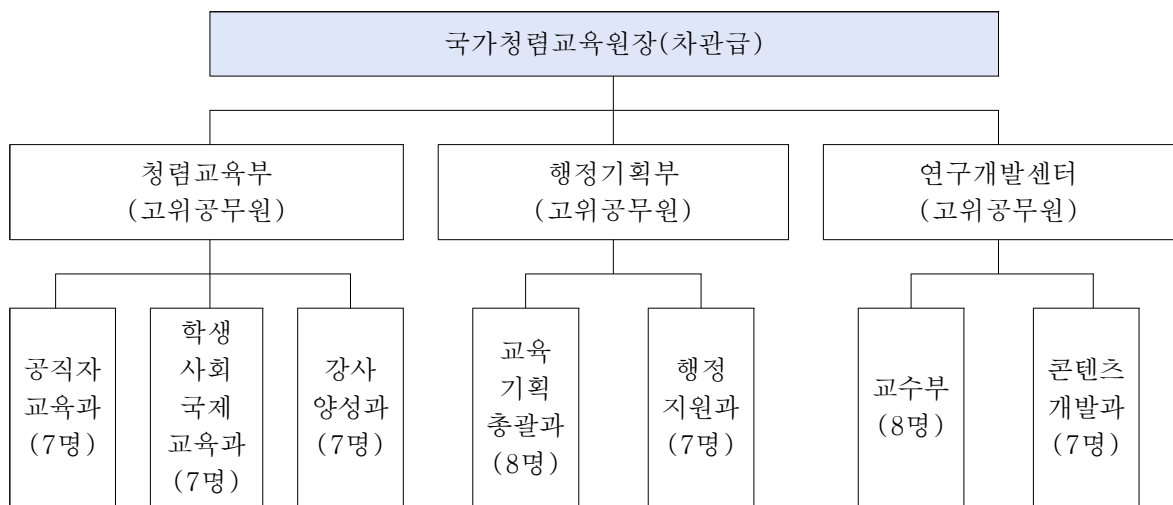
(단위: 명, 백만원)

직급	인원수	소요예산	산출내역
차관급	1	138	11,475,000원×1명×12개월
고위공무원	3	364	10,119,830원×3명×12개월
3급	1	107	8,893,520원×1명×12개월
4급	3	272	7,547,136원×3명×12개월
5급	8	525	5,468,388원×8명×12개월
6급	4	194	4,045,173원×4명×12개월
7급	3	198	2,712,284원×3명×12개월
전문경력관 가군	3	237	6,587,093원×3명×12개월
전문경력관 나군	4	161	3,351,200원×4명×12개월
합계	30	2,095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수당) 수당(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상여금 등)은 2024년 예산 기준 위원회의 봉급총액 대비 수당총액 비율인 28%를 적용
- (기관부담금) 위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급여액에 최근 3년간 공무원 평균 임금상승률인 1.9%²⁾를 적용하고,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산출한 법정부담금 (공무원 기준)을 합하여 인건비를 산출함³⁾

[그림 1] 국가청렴교육원 조직도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표 4] 국가청렴교육원 설치 시 인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추정: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봉급(A)	2,176	2,217	2,259	2,302	2,346	11,299
수당(B=A×28%)	609	621	633	645	657	3,164
부담금(C=(A+B)×요율)	368	378	387	398	408	1,938
합계(A+B+C)	3,153	3,215	3,279	3,344	3,410	16,401

2) 최근 3년간 공무원 임금상승율 2022년 1.4%, 2023년 1.7%, 2024년 2.5%

3)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산정한 법정부담금은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구성되며, 연도별 기관부담률은 2026년 13.210%, 2027년 13.305%, 2028년 13.399%, 2029년 13.494%, 2030년 13.584% 적용

- (기본경비) 위원회의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율인 16.07%⁴⁾ 적용
- (자산취득비) 추계 첫해인 2026년에만 발생하는 자산취득비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수행한 연구용역인 『법안비용추계에 이용되는 단가 및 기준 정보에 관한 연구(2020. 6)』에서 산정한 1인당 자산취득비 420만원에 국회예산정책처의 물가상승률 적용 후, 인원수 30명을 곱하여 1억 5,059만원(30명×502만원) 산출
- (추가재정소요) 개정안에 따라 현재의 청렴연수원이 국가청렴원으로 격상하고, 이에 따른 인원 증가 시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191억 8,800만원으로 추정

[표 5] 국가청렴교육원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인건비(A)	3,153	3,215	3,279	3,344	3,410	16,401
기본경비 (B=A×16.07%)	507	517	527	538	548	2,636
자산취득비(C)	150.59					151
합계(A+B+C)	3,810	3,732	3,806	3,882	3,959	19,188

나. 학교의 부패방지교육 지원(안 제81조의3)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학교에서 실시되는 부패방지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연구와 교육활동을 위한 시설·인력·경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학교의 부패방지교육 지원을 위하여 청렴교육 프로그램 개발, 청렴 교육과정 운영, 청렴교육 연수 과정 운영, 청렴교육 주간 운영 등 연간 8억 9,000만원으로 추정

4) 국민권익위원회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율 16.07%((국민권익위원회 기본경비(대상) 31.6억원 + 국민권익위원회 기본경비(비대상) 46.9억원) ÷ 인건비 488억원)

- 학생 대상 맞춤형 청렴교육 프로그램 개발: 1억 5,000만원=5,000만원×3식(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및 중학교 각 1식)
- 학생 대상 청렴 교육과정 운영: 1억 4,000만원=115개교×125만원
 - 현재 운영 중인 학생 대상 청렴교육 사업(‘찾아가는 청렴체험교실’)을 200개교(2024년 현재 85개교)로 확대 예정
- 교원 대상 청렴교육 연수 과정 운영: 5억원=250만원×200회
 - 250만원: 1박 2일 과정 운영 기준 과정당 소요예산(교육자료 인쇄, 강사 섭외, 여비 등)
 - 200회: 교육청(17개) 및 교육지원청(176개)을 대상
- 청렴교육 주간 운영 : 1억원(행사장 섭외, 운영비용 등)

[표 6] 학교의 부패방지교육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학생대상 맞춤형 청렴교육 프로그램 개발	150	150	150	150	150	750
학생 대상 청렴교육과정 운영	140	140	140	140	140	700
교원대상 청렴교육 연수과정 운영	500	500	500	500	500	2,500
청렴교육주간 운영	100	100	100	100	100	500
합계	890	890	890	890	890	4,450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다. 기업의 부패방지교육 지원(안 제81조의4)

- 개정안에 따라 위원회가 기업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기업윤리 확립 및 청렴문화 조성 교육의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지원하는 경우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기업 청렴·윤리경영 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기업별 청렴·윤리경영 프로그램 개발, 전문강사 양성 등으로 구분하여 추정한 결과 연간 10억 2,500만원으로 추정
 - 기업 청렴윤리경영 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1억 2,500만원=250만원×50회

- 250만원(공공·민간기업에 대한 청렴윤리경영 교육과정 운영 소요비용)
- 기업별 청렴윤리경영 프로그램 개발 소요예산: 8억원=4,000만원×20식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산업 대분류(21종)에서 국제·외국기관을 제외한 20종
- 청렴윤리경영 전문강사 양성과정 소요예산 : 1억원=500만원×20회
 - 4일(3박 4일) 과정 운영 기준 과정당 소요예산(교육자료 인쇄, 강사 섭외, 여비 등)
 - 매회당 50명씩 1,000명의 전문강사 양성

[표 7] 기업에 대한 부패방지 교육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기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125	125	125	125	125	625
기업별 프로그램 개발	800	800	800	800	800	4,000
전문강사 양성	100	100	100	100	100	500
합계	1,025	1,025	1,025	1,025	1,025	5,125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라. 국제협력 촉진(안 제81조의5)

- 개정안에 따라 위원회가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 외국의 연구개발기관 및 단체 등과 국제 부패방지 관련 조약의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 개발 및 지원 등을 위하여 국제협력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반부패기술지원(ODA) 사업 및 외국 공무원 교육과정 운영, 국제 반부패교육기관 간 교류협력 등으로 구분하여 추정한 결과 연간 7억원으로 추정
 - 반부패기술지원(ODA) 사업 및 외국 공무원 교육과정 운영: 5억원=1억원×5회
 - 초청항공료, 강사비 등 교육운영비, 식비·숙박비, 차량 임차료 등
 - 국제 반부패교육기관 간 교류협력: 2억원(국제 교류협력 예산 1억 5,000만원 및 국제 정기간행물 예산 5,000만원 등)

[표 8] 국제협력의 촉진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ODA 사업 및 외국 공무원 교육과정 운영	500	500	500	500	500	2,500
국제 반부패교육기관 간 교류협력	200	200	200	200	200	1,000
합계	700	700	700	700	700	3,500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마. 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청렴교육원을 설치하고, 학교의 부패방지교육 지원, 기업의 부패방지교육 지원, 국제협력 업무 수행 시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64억 2500만원, 2030년 65억 7,4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322억 6,300만원(연평균 64억 5,3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표 9]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국가청렴교육원 설치	3,810	3,732	3,806	3,882	3,959	19,188	3,838
학교의 부패방지교육 지원	890	890	890	890	890	4,450	890
기업의 부패방지교육 지원	1,025	1,025	1,025	1,025	1,025	5,125	1,025
국제협력 촉진	700	700	700	700	700	3,500	700
합 계	6,425	6,347	6,421	6,497	6,574	32,263	6,453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여은구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여은구	02-6788-4673	cecil@assembly.go.kr